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완화〉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06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금융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완화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5. 8. 1.
3. 회 부 일: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 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

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33조).

Ⅲ. 검토의견: 금융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완화

□ 개정안은 금융회사¹⁾에 대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보유 요건을 「상법」 대비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33조제6항 신설),

○ 「상법」 제408조의9²⁾에 따른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완화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④ (생략)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u><신설></u>	제33조(소수주주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제324조, 제408조의9----- ----- ----- -----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현행	개정안
⑥·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6조의2(같은 법 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제7항까지의----- ----- ----- -----.

□ 현행 「상법」은 다수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 해임청구권, 주주대표소송 등의 소수주주권³⁾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주주 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⁴⁾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6⁵⁾).

2)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3) 주주제안권,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행위)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등

4)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수가 많아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개별 주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회사의 소수주주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단일 주주 또는 소수의 주주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임.

5)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3조는 금융회사 특유의 주주 분산 구조⁶⁾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상 소수주주권 중 일부의 행사 요건을 대폭 낮추어, 실질적 경영 감시와 투자자 보호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즉,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3조는 주주제안권,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이사 해임, 유지청구권, 주주대표소송,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행사 요건을 「상법」에 비해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6)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분보유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주주 분산구조가 나타남.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 주식 보유 요건>

제33조	소수주주권의 내용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주식보유 요건 ^{주1)}	상법상 요건 ^{주2)}	
			일반회사	상장회사 (§542의6)
제1항	주주제안권 (「상법」§363의2)	0.1%	3%	1% (대형0.5%)
제2항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상법」§366)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상법」§467)	1.5% 대형금융사 0.75%	3%	1.5%
제3항	해임 청구 (「상법」§385, §415, 539)	0.25% 대형금융사 0.125%	3%	0.5% (대형 0.25%)
제4항	유지청구권 (「상법」§402)	0.25% 대형금융사 0.125%	1%	0.05% (대형 0.25%)
제5항	주주대표소송 (「상법」 §403조, §324, §415, §424의2, §467의2, §542)	0.001%	1%	0.01%
제6항	회계장부열람권 (「상법」§466)	0.05% 대형금융사0.025%	3%	0.1 (대형 0.05%)

주1)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발생주식 총수 기준

주2) 발행주식 총수 기준

□ 그런데 지난 2020년 12월 29일 「상법」 7)이 개정되어 소수주주권
의 일환으로 다중대표소송이 신규로 도입되었음.

○ 다중대표소송은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子)에 대하여 자회
사 이사, 감사, 집행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7)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
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
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있는 제도로, 자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회사 및 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자회사의 손해가 모회사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의 궁극적 당사자인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도입되었음⁸⁾.

- 이에 따르면, 일반(주식)회사의 경우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법」 제406조의2 등),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제7항).

-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의 행사 요건을 「상법」상 일반회사의 20분의 1, 상장회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즉,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을 청구하던 것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0.05%) 이상 보유’하면 다중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8) 도입 논거로는 ① 최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활성화되었지만 종속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 ②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억제·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자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그 견제수단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철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 7.)

＜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의 대표소송 주식보유 요건 ＞

구분	비금융회사(상법)		금융회사(상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반회사	상장회사		
주주 대표소송	발행주식 총수의 1% (\$403①)	6개월 계속 보유& 발행주식 총수의 0.01% (\$542의6⑥)	6개월 계속 보유& 발행주식 총수의0.001%, 대통령령에 따라 보유* (\$33⑤)	
다중 대표소송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406의2①)	6개월 계속 보유& 발행주식 총수의 0.5% (\$542의6⑦)	[현행] (상법 적용)	[개정안] 6개월 계속 보유& 발행주식 총수의0.05%, 대통령령에 따라 보유* (안 \$33⑥)

* 주식의 소유,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주주 2인 이상의 주주권 공동행사

□ 금융회사의 경우 주주 분산 구조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상법」상 소수주주권 중 일부의 행사 요건을 이미 완화하여 소수주주권의 실질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주주권의 일환인 다중대표소송도 그 행사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중대표소송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지주회사⁹⁾ 등 금융회사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중대표소송의 요건을 「상법」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9)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소유한도 4%, 동일인 주식소유한도 10%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법」 대비 다중대표소송 소송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해관계자인 은행연합회는 모회사의 0.05%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어, 대다수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영진의 적극적·재량적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기업집단과 달리 지배주주가 없어 지배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사익편취행위를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금융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건을 완화·적용할 경우 일반 기업집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법취지와 무관한 소송 증가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입장임.

○ 다만, 다중대표소송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연평균 제기 건수가 적어 남소(濫訴)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을 「상법」 상장회사에 비해 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의 실효성 제고 취지와 함께 금융회사 지분구조 및 경영 안정성, 다중대표

소송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외, 「상법」 제408조의9¹⁰⁾에 따른 집행임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완화하려는 안 제33조제5항의 개정내용은 「상법」 제408조의9에서 집행임원에 대해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33조제5항에서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면서도 「상법」 제408조의9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10)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해서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참고자료1】 금융지주회사 현황(2025. 6월. 기준)

상호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양종희 (‘23.11.~’26.11.)	진옥동 (‘23.3.~’26.3.)	함영주 (‘25.3.~’27.3.)	임종룡 (‘23.3.~’26.3.)	이찬우 (‘25.2.~’27.2.)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8.37%	국민연금공단8.64%	국민연금공단9.09%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특수관계인 8.19%	농협중앙회 100%
임직원총수 (연결기준)	50,762명	29,671명	21,499명	26,895명	23,425명
총자산 (연결기준)	780.6조 원	752.7조 원	642.0조 원	534.1조 원	592.0조 원
당기순이익 (연결기준)	3조4,357억원	3조374억원	2조3,010억원	1조5,520억원	1조6,287억원
자회사	【자회사 11개】 ① 국민은행 ② KB증권 ③ KB손해보험 ④ KB국민카드 ⑤ KB라이프생명 ⑥ KB자산운용 ⑦ KB캐피탈 ⑧ KB저축은행 ⑨ KB부동산신탁 ⑩ KB인베스트먼트 ⑪ KB데이터시스템 【손자 이하 51개】	【자회사 15개】 ① 신한은행 ② 신한카드 ③ 신한투자증권 ④ 신한라이프 ⑤ 신한캐피탈 ⑥ 제주은행 ⑦ 신한자산운용 ⑧ 신한디에스 ⑨ 신한펀드파트너스 ⑩ 신한저축은행 ⑪ 신한자산신탁 ⑫ SHC매니지먼트 ⑬ 신한리츠운용 ⑭ 신한벤처투자 ⑮ 신한Z손해보험 【손자 이하 32개】	【자회사 14개】 ① 하나은행 ② 하나증권 ③ 하나금융티아이 ④ 하나캐피탈 ⑤ 하나생명보험 ⑥ 하나손해보험 ⑦ 하나자산신탁 ⑧ 하나저축은행 ⑨ 하나카드 ⑩ 하나펀드서비스 ⑪ 하나대체투자자 산운용 ⑫ 핀크 ⑬ 하나벤처스 ⑭ 하나에프앤아이 【손자 이하 32개】	【자회사 14개】 ① 우리은행 ② 우리카드 ③ 우리금융캐피탈 ④ 우리종합금융 ⑤ 우리자산신탁 ⑥ 우리금융저축은행 ⑦ 우리자산운용 ⑧ 우리금융에프앤아이 ⑨ 우리신용정보 ⑩ 우리펀드서비스 ⑪ 우리프라이빗 에쿼티 자산운용 ⑫ 우리에프아이에스 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⑭ 우리벤처파트너스 【손자 이하 23개】	【자회사 9개】 ① NH농협은행 ② NH농협생명 ③ NH농협손해보험 ④ NH투자증권 ⑤ NH-Amundi자산 운용 ⑥ NH농협캐피탈 ⑦ NH저축은행 ⑧ NH농협리츠운용 ⑨ NH벤처투자 【손자 이하 28개】
상 호	DG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황병우 (‘24.3.~’27.3.)	빈대인 (‘23.3.~’26.3.)	김기홍 (25.3.~’28.3.)	김남구 (‘23.1.~’26.3.)	김용범 (‘14.3.~’26.3.)
최대주주	(주)오케이저축은행 9.55%	부산롯데호텔 외 특수관계인 10.47%	삼양사 외 특수관계인 14.75%	김남구 외 특수관계인 21.23%	조정호 외 특수관계인 53.28%
임직원총수 (연결기준)	5,821명	7,748명	4,760명	4,945명	4,959명
총자산 (연결기준)	100.2조 원	155.5조 원	70.2조 원	115.9조 원	124.2조 원
당기순이익 (연결기준)	3,093억원	4,758억원	3,704억원	9,976억원	1조3,350억원
자회사	【자회사 11개】 ① iM뱅크 ② 하이투자증권 ③ iM라이프생명보험 ④ iM캐피탈 ⑤ iM에셋자산운용 ⑥ iM유펜이 ⑦ iM데이터시스템 ⑧ iM신용정보 ⑨ iM투자파트너스 ⑩ 뉴지스탁 ⑪ ASSET MANAGEMENT ASIA PTE.LTD. 【손자 이하 5개】	【자회사 9개】 ① 부산은행 ② 경남은행 ③ BNK캐피탈 ④ BNK투자증권 ⑤ BNK저축은행 ⑥ BNK자산운용 ⑦ BNK벤처투자 ⑧ BNK신용정보 ⑨ BNK시스템 【손자 이하 6개】	【자회사 5개】 ① 전북은행 ② 광주은행 ③ JB우리캐피탈 ④ JB자산운용 ⑤ JB인베스트먼트 【손자 이하 4개】	【자회사 10개】 ① 한국투자증권 ② 한국투자파트너스 ③ 한국투자저축은행 ④ 한국투자캐피탈 ⑤ 한국투자프라이빗 에쿼티 ⑥ 한국투자부동산신탁 ⑦ 한국투자개발파트너 ⑧ KIARA CAPITAL II ⑨ KIARA ADVISORS ⑩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손자 이하 54개】	【자회사 3개】 ① 메리츠화재 ② 메리츠증권 ③ 메리츠대체투자 운용 【손자 이하 4개】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문 의 처
02)6788-5104